

보조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(제43조제2항제3호 관련)

1. 보조제동등의 설치기준

가. 설치위치

1) 너비 방향

가) 보조제동등의 기준점은 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에 위치할 것. 다만, 보조제동등을 중앙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-등화 광도기준에 적합한 2개의 보조제동등을 대칭으로 설치하거나, 한 개의 보조제동등을 중앙 수직 종단면 좌측 또는 우측에 가깝게 설치해야 한다.

나) 보조제동등의 기준점은 수직 종단면에서 최대 15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

2) 높이 방향

가) 보조제동등의 발광면 최하단 수평면은 뒷면 창유리 노출면 최하단 아래 방향으로 150밀리미터 이하이거나 지상에서 850밀리미터 이상일 것

나) 보조제동등의 발광면 최하단 수평면은 제동등의 발광면 최상단 수평면보다 높게 설치할 것

3) 길이 방향

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할 것

나. 관측각도

1) 수평각

보조제동등의 발광면은 좌측 10도·우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

2) 수직각

보조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·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

다. 보조제동등이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

라. 그 밖의 기준

1) 보조제동등은 다른 등화장치와 독립하여 설치할 것

2) 보조제동등은 자동차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제동등이 자동차 실내에 설치되는 경우 운전자의 간접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2. 보조제동등의 광도기준

가. 최대 및 최소광도

| 구 분  | 최소광도<br>(cd) | 최대광도(cd) |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
|      |              | 단일 등화    | D-등화  |
| 고정광도 | 25 이상        | 110 이하   | 55 이하 |
| 가변광도 | 25 이상        | 160 이하   | 80 이하 |

주)

1. D-등화는 같은 기능을 가진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.
  - 가. 기준축 방향에서 투영면의 전체면적이 투영면들을 밖으로 감싸는 최소 사각형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.
  - 나. 투영된 두 개의 분리된 면 간 최소 거리가 기준축 방향에서 75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.
2. 고정광도는 고정된 광도를 제공하는 보조제동등을 의미한다.
3. 가변광도는 작동조건에 따라 광도가 변하는 보조제동등을 의미한다.

나.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

| 측정점 및 측정구역(각도) |          | 광도(cd)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
| H, 5U, 5D      | 10L, 10R | 16 이상  |
|                | 5L, 5R   | 25 이상  |
|                | V        | 25 이상  |
| 10U            | 10L, 10R | 8 이상   |
|                | V        | 16 이상  |
| 관측각도 범위내       |          | 0.3 이상 |

주)

양산자동차 보조제동등의 광도기준은  $\pm 20$ 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. 다만, 관측각도 범위 내 최소광도는 0.2cd 이상이어야 한다.